

대여권
비친고죄
상설단속반 운영 조항 놓고 업계 논의 활발

전문 개정안 검토한 각계 전문가들
'줄속개정' 비판도

issue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새로 개정될 저작권법엔 공중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대여권, 상설단속반 운영, 비친고죄 조항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선 이같은 개정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대여권, 비친고죄, 상설단속반 운영 조항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 조항은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으로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도서대여점 관계자들은 '제47조 도서대여에 대한 보상 조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항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만화대여점과 출판계, 대여권 조항 놓고 이해 엇갈려**
우리만화연대 김종범 사무국장은 "대여거부 의사를 밝힌 만화가는 5퍼센트, 대여찬성 의사를 밝힌 만화가는 95퍼센트"라며 "5퍼센트 저작자 권익을 존중하기 위



해 나머지 저작자인격을 침해한 것은 저작인격권 보호라는 저작권법 본래 의미를 간과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서대여점에서 장르문학과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80퍼센트 이상. 장르문학 작가와 만화가 대부분이 대여보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정된 저작권법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주재국 부회장 역시 "도서대여점에서 일반도서구입비는 3.6퍼센트 정도"라며 "3퍼센트가 조금 넘는 이익을 위해 장르문학과 만화산업에 인쇄도서 보상 일괄청구라는 내용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주 부회장은 "대여권 조항 도입 시 도서대여점 시장이 붕괴된다는 산업적인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며 "도서대여점 시장이 저작권법 영역에서 작은 부분이겠지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47조 도서대여에 대한 보상 조항' 신설을 반겼던 출판계는 도서대여점측의 강력한 입장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출판계 한 관계자는 "도서대여점측의 의견을 반영해 특수성을 살린 조항이 마련된다고 할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기대한 결과를 안겨줄 것인가" 반문했다. 유통시장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는 출판계의 사정을 두고 볼 때, 대여점에서 잘 나가는 책이 비합법적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시장에 들어오지 말란 법 없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조항은 도서대여점이 성업을 누리던 1997년에 충분히 합의 가능했으나, 사양길에 접어든 오늘 논의된 것 또한 문제”라며 “출판계와 도서대여점측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대희 미국변호사는 앞의 입장과 또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이 교수는 “대여권을 인정한다면 내외국인 모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는 것인데, 외국저작자에게까지 도서대여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며 “저작권법으로 대여권을 관리하기 보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비친고죄, 상설단속반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 분분**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도입 적용한 개정안 제137조 고소 조항을 놓고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항수정 의견을 피력했다. 고려대 안효질 교수는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일본과 대인에서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친고죄 조항은 불황 타개책을 강구중인 출판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사업부 장영태 과장 역시 “타인의 저작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축적한 연구성과를 출판하는 학술, 전문서적 출판계가 가장 타격이 클 것”

전문 개정안 곳곳 허점 노출, '졸속개정' 비판 속출

정청래 의원 '몇 차례 공청회 가질 것' 약속, 소란스런 장내 분위기 가라앉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은 ‘졸속개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고려대 안효질 교수는 “몇 가지 조항을 첨삭하는 수준에서 전문 개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입법 이전 오랜기간 해당 업계와의 교류 및 협의가 있었는가”를 물으며 “개정이 어려운 법의 속성을 생각해 신중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기획조사부장은 “문화관광부장은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들며 “의원입법이라 하기에 행정부의 과도한 견제가 거슬린다”고 비판했으며, 전문영 변호사는 음성 없는 연주음악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 신설 조항 가운데 ‘디지털음성송신’ 부분의 명기를 ‘디지털음’으로 명기하는 것이 적확하다”고 조항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라며 “국익 차원에서라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과장은 비친고죄 조항과 관련한 상설단속반 운영 조항에 대해 “출판 분야의 불법복제 근절활동은 1982년부터 출판협회가 맡아 제도해 왔고, 2000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거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 인수, 인계하여 출판계와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운영을 전제로 업무를 개시하되, 오프라인 단속은 출판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정환 변호사는 “권리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범법자로 기록되는 비친고죄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은 분명 잘못된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영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의 개정안 설명, 김지연, 남희섭, 박익환, 안효질, 이대희, 전문영 씨 등 각계 관계자들의 개정안에 관한 개별발표로 진행됐다. 세부토론에선 ‘대여권 도입’을 주제로 우리만화연대 김종범 사무국장과 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주재국 부회장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를 주제로 최정환 변호사와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기획조사부장이 각기 의견을 개진했다. ☞

취재 박용두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한편 종합토론 및 질의 시간에서도 참석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장문학회회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개정안이 4월 중으로 있을 입안의 골격이라 할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과연 있겠는가”, “날 치기식으로 통과시킬 바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성규관대 이동식 씨는 “블로그, 싸이월드 등 개인공간을 운영하는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네티즌들은 구체적인 조항 마련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학도서관 관계자는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개정안 조항을 들며 “작년 7월 대학도서관측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조문변경된 것이 한 글자도 없다”며 “각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다시 거칠 것”을 요구했다.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는 김필호 씨는 “각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저작권법이라는 테두리에 얽게 전체를 뭉뚱그려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업계 실정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의원은 “총론 못지않게 각론도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각론들을 참고해 개정안을 수정, 필요하다면 몇 차례 공청회를 더 가질 것”이라고 해 소란한 장내를 진정시켰다. ☞